
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14 ----- 사하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15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3. 27 (제1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복지사업과장 구용대)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무소설치 등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사하여성회관 직제가 폐지되었고,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이 개관되어 주민(여성)교육 확대 추진 및 예식장 등 시설 대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제2항

다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

3. 검토의견

- 본 폐지 조례안은 2004. 7. 1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업무성격이 상이한 분야에 대하여는 통폐합하여 소관별, 기능별로 분류하여 추진함이 주민편익제고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
- 또한 여성회관이 지난 2004. 6. 23부로 매각 완료되어 교육부 소관 학교용지로 관리 전환된 상태고, 그동안 증축 중이던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이 완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
-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폐지 조례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